

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2274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1년 5월 4일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본 개정조례안의 적용 대상 세입징수포상금을 특정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 시행 이후 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심의대상부터 적용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본 조례안 적용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을 특정할 수 있도록 부칙 적용례를 마련함(부칙 제1조(수정), 제2조(신설)).

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6조에 따른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심의대상부터 적용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부 칙	부 칙
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조(시행일)</u>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<u>제2조(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)</u> 제5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6조에 따른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심의대상부터 적용한다.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2호 중 “제1호 및 제2호”를 “제1호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100만원”을 “125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6조에 따른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심의대상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지급대상) ① (생 략)</p> <p>1. ~ 7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<u>제1호 및 제2호</u>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</p>	<p>제2조(지급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제1호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<p>제5조(지급한도) ①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<u>100만원</u>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	<p>제5조(지급한도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125만원</u>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